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-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등 인용조문 변경(3개 조문)

- 지급대상(안 제2조), 지급(안 제7조), 환수(안 제8조)

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(4개 조문)

- 목적(안 제1조), 지급대상(안 제2조), 지급기준(안 제3조),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,

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결과 : 2017. 4. 27. ~ 5. 17.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5. 23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를 “필요한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에 대하여”를 “사람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공무원(기능직·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징수촉탁에 의하여”를 “징수촉탁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”로,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2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채납자에 대하여”를 “채납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31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공무원에 대하여”를 “공무원에게”로 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”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호를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 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에</u> <u>대하여</u>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지난 연도 체납액(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 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“체 납액”이라 한다)을 징수하거 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 이 인정되는 <u>공무원(기능직 ·</u> <u>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을 포</u> <u>합한다. 이하 같다)</u> 및 민간인</p> <p>2. 3. (생 략)</p> <p>4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의 <u>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</u> <u>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</u></p> <p>5. 자동차 관련 과태료 <u>징수촉</u> <u>탁에 의하여</u> 세입증대에 기여 한 공무원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-필요한-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지급대상) ① ----- -----<u>사람에</u> <u>게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공무원</u>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에 <u>따른 징수촉탁으로</u> ----- -----</p> <p>5. ----- <u>징수촉</u> <u>탁으로</u> ----- -----</p>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공적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 (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)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, 체납처분,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, 관허사업 제한,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,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,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

2. 3. (생략)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“은닉재산”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,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

② -----

1. -----

----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
조-----
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1조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는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.

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

2. 3. (생략)

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채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채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

2. (생략)

3.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

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채납액

-----.

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1. -----
-- 채납자에게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31조-----

⑤ -----

공무원에게-----
-----.

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(생략)

제3조(지급기준)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

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
2.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

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~ ⑧ (생략)

제7조(지급) ①·② (생략)

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지급기준)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따라 -----

-

제4조(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사람 -----

④ -----
----- 한 차례
만 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르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8조(환수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③ -----
---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호를 -----

-----.

제8조(환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-----

-----.